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39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김 건·안철수·유용원

정성국 • 박충권 • 인요한

신동욱 • 권성동 • 강선영
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 고 있음.

그런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,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(4.5%)은 일반국민(2.7%)에 비하여 여전히 높고,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.2%인데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2.7%로 약 7배에 이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함.

또한,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, 취

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대비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,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임.

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,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8제1항제1호 중 "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"을 "60세 이상인 근로자, 경력단절 여성 또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	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
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	
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	
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025년	
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
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	
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	
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	
근로자"라 한다)의 수가 직전	
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	
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	
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	
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	
도의 종료일부터 1년(중소기업	
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)	
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	
까지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	
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	
1.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	1
근로자, 60세 이상인 근로자	<u>60세 이상인 근로</u>
<u>또는 경력단절 여성</u> 등 대통	자, 경력단절 여성 또는 「북

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상 시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 인원 수(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 다)에 400만원[중견기업의 경 우에는 8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450만원(중소기업 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서 증가한 경우에는 1,550만 원)]을 곱한 금액

한이탈	주민의	보호	및	<u>정착</u>
지원에	관한	법률」	제:	2조제
<u>1호에</u>	따른	북한이	탈구	<u> 민인</u>
근로자				

- 2. (생략)
- ② ~ ⑧ (생 략)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